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9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9.3.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7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및 아쉬운 점	1
2. 2019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6
1.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6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0
III. 세부 추진계획	14
전략목표 I	14
전략목표 II	41
전략목표 III	68
전략목표 IV	97
기관대표 성과지표 I	122
기관대표 성과지표 II	123
기관대표 성과지표 III	124
기관대표 성과지표 IV	126
IV. 환류 등 관련계획	128
1. 이행상황 점검	128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31
3. 변화관리 계획	132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34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38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45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및 아쉬운 점

1 주요 정책성과

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성장 제약요인 해소
 - * '18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13년(5.7%) 이후 최저수준인 5.8%
 -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구입 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18.9월)
 -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18.10월)**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채기 지원****으로 경제활동 복귀 유도
 -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로 최대 1.1조원(293만명)의 이자부담 경감
 - ** '17년 이후 총 34.8조원(349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완료

②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 새로운 참가자가 진입하여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월)
 -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34% 지분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인터넷전문은행법」, '18.9월 제정)
-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금융혁신지원특별법」, '18.12월 제정)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하고,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
 - * 클라우드펀딩 조달금액(억원): ('16년) 174 → ('17년) 280 → ('18년) 301

3 시민층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국민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연장('18년 → '21년)하고 가입대상* 확대
 - *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 추가
 - ※ ISA 가입금액은 꾸준한 증가 추세 : ('17.9월) 3.4조원 → ('18년말) 5.6조원
- 서민층이 과도한 금리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18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약 7조원(58만명) 공급
 - 아울러,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도 대폭 확대
 - * 공급실적 비교 : ('16.7월~'17.6월) 2.8조원 → ('17.7월~'18.6월) 3.4조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39 → 46개소) 등 원스톱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민금융 수요자의 편의 확대
 - * 서민금융 상담실적 비교 : ('17년) 90만건 → ('18년) 97.7만건

2 아쉬운 점

: 대국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 금융회사가 과거 관행·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이 아직 시장에 착근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상존
 - 아울러,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고령층 등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
-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규제 재정립 등을 통해 금융업의 자율성·역동성을 높여갈 시점
-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입법지연*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완비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 * (예) 금융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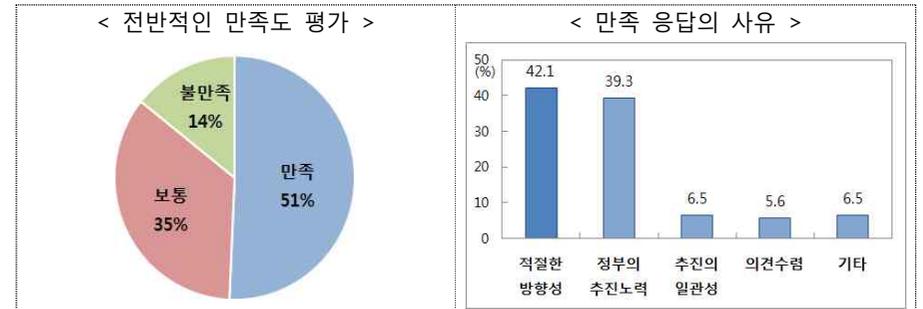
참고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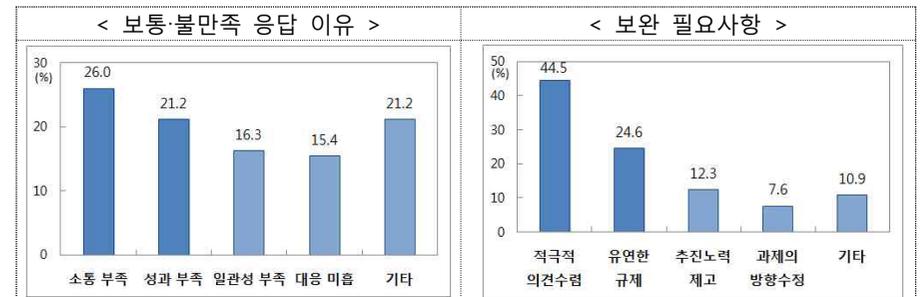
◆ 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갤럽)를 통해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보완사항 등 점검

1. 설문조사 결과 : 전반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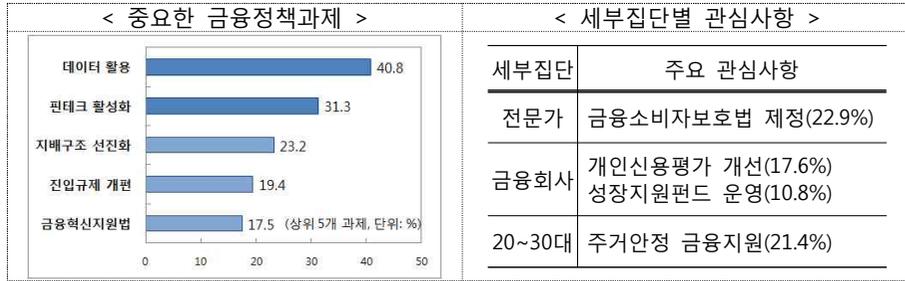
- 발표된 금융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다수(50.7%)
 - 주된 만족의 이유로는 정책방향 설정의 적절성(42.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39.3%), 추진 일관성(6.5%) 등이 제시



- 반면, 불만족·보통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 부족(21.2%), 소통·의견수렴 미흡(26.0%) 등이 지적
 - 향후 금융정책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적극적 의견수렴(44.5%), 유연한 금융규제체계 마련(24.6%) 등이 제기
 - ⇒ '19년 금융정책방향 검토 과정에서 금융협회, 금발심, 연구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중점



- 주요한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빅데이터(40.8%), 핀테크(31.3%)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3.2%) 順
- 다른 집단에 비해 금융전문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큰 관심
- 응답자 연령별로 20~30대 청년층은 주거안정 지원에 높은 관심



2.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 집단별 평가

- (소비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으로 저하된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적 가시화 필요
 -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자 보상 등 사후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
 - 포용적 금융정책 과제가 지나치게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 제기 → 포용적 금융의 외연확대 검토 필요
- (금융전문가) 금융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을 고려시 지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부가가치 제고가 중요한 시기
 - 핀테크·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시장의 자율성·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평가
 -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노력 필요성도 강조
- (금융회사)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업에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제체계 정립 필요
 -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있는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우려로 정책방향과 실제 감독간에 괴리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

2. 2019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경제·금융여건) 저성장·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투자 위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
 - ※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구조개선 추진과 함께, 신산업·혁신분야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
 -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
- (정책여건)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산, 금융부문 공정경제 확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 전향적인 정책보완·추진* 필요
 - * 특히,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 구체성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집중 점검·관리할 필요성 제기

2 업무추진 방향

- ◇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금융신뢰 확산**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혁신금융)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벤처·혁신부문 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 혁파
- (신뢰금융) 금융소비자를 가장 우선하는 금융시스템을 확고히 정착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을 적극 발굴·개선
 -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등 금융분야 채신을 위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완료
- (금융안정)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주력

1.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및 기구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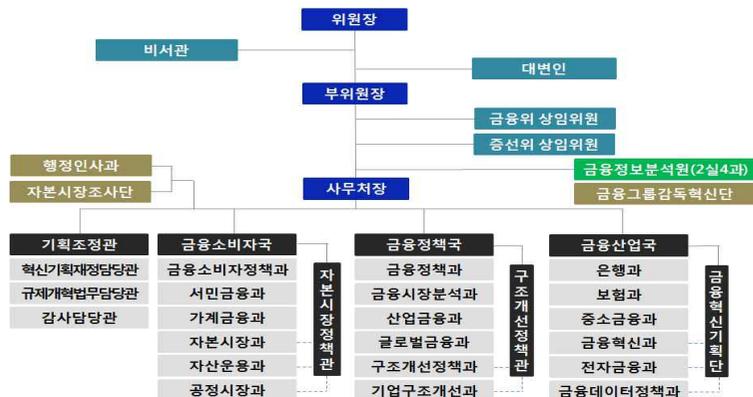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구성(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부서별 주요기능 >

구 분	주요 기능
기획조정관	·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내·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 내·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외국환건전성 감독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
구조개선정책관	·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
금융산업국	· 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국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관행 개선
자본시장정책관	·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 ·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
자본시장조사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분류 ·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
대변인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금융그룹감독 정책, 건전성 감독 등 ·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원

□ 정원 : 292명 ('18. 12월말 현재)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정원 합계	2	279	3	8	292
본부	2	223	3	-	228
금융정보분석원	-	56	-	8	64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	'19	'20	'21	'22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114	9,546	15,943	13,042	9,182
(전년대비증가율, %)		132.0	67.0	△18.2	△29.6
○ 총계	266,632	307,993	367,191	339,303	378,406
(전년대비증가율, %)		15.5	19.2	△7.6	11.5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37	272	291	312	334
(전년대비증가율, %)		14.8	7.0	7.2	7.1
○ 기본경비	73	77	79	80	82
(전년대비증가율, %)		5.5	2.6	1.3	2.5
○ 주요사업비	3,803	9,197	15,574	12,651	8,766
(전년대비증가율, %)		141.8	69.3	△18.8	△30.7
□ 예산					
○ (총)지출	3,469	8,921	15,277	13,023	9,182
(전년대비증가율, %)		157.2	71.2	△14.8	△29.5
○ 총계	24,469	29,921	74,277	76,023	76,182
(전년대비증가율, %)		22.3	148.2	2.4	0.2
【일반회계】 ¹⁾					
○ (총)지출	3,469	8,921	15,277	13,023	9,182
(전년대비증가율, %)		157.2	71.2	△14.8	△29.5
○ 총계	24,469	29,921	74,277	76,023	76,182
(전년대비증가율, %)		22.3	148.2	2.4	0.2
□ 기금					
○ (총)지출	645	625	666	19	0
(전년대비증가율, %)		△3.1	6.6	△97.1	△100.0
○ 총계	242,162	278,072	292,914	263,280	302,224
(전년대비증가율, %)		14.8	5.3	△10.1	14.8

구 분	'18	'19	'20	'21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830	721	680	699	652
(전년대비증가율, %)		△13.1	△5.7	2.8	△6.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9,846	17,219	10,518	8,991	15,940
(전년대비증가율, %)		74.9	△38.9	△14.5	77.3
【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78,278	69,970	77,604	76,884	75,615
(전년대비증가율, %)		△10.6	10.9	△0.9	△1.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44,556	66,483	59,847	67,729	74,235
(전년대비증가율, %)		49.2	△10.0	13.2	9.6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지출	645	625	666	19	0
(전년대비증가율, %)		△3.1	6.6	△97.1	△100.0
-총계	34,544	87,228	105,150	64,065	68,092
(전년대비증가율, %)		152.5	20.5	△39.1	6.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74,109	36,451	39,116	44,911	67,690
(전년대비증가율, %)		△50.8	7.3	14.8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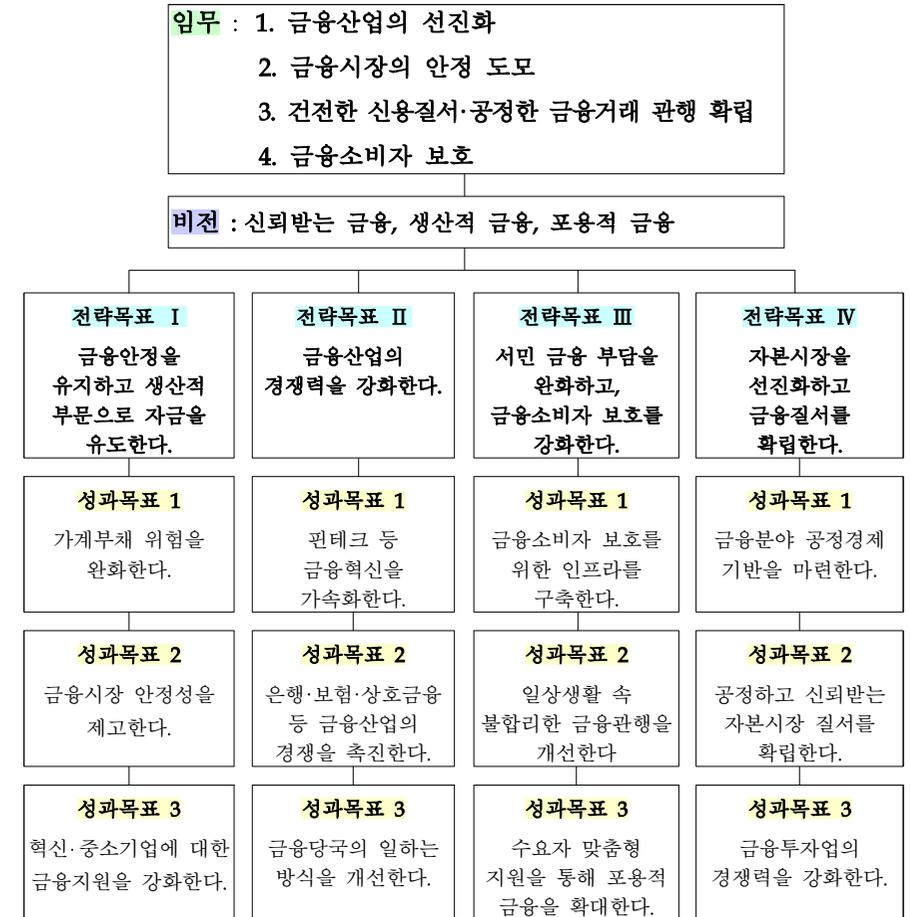
* '18년은 실적, '19년은 예산, '20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을 명기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임무) 이를 위해 “①금융산업의 선진화, ②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③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④금융소비자 보호”를 4대 임무로 설정
- (비전) 정책비전을 “신뢰받는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추진
 - 전략목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 전략목표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전략목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9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선정
-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2개의 성과목표 하에 39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추진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12개 성과목표에 대한 13개의 성과지표와 39개 관리과제에 대한 63개의 성과지표를 각각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12	13	39	6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가계부채 관리강화	업무 1-2-2, 국정 21-1
	②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업무 1-2-2
	③ 취약차주 안전망 강화	업무 1-2-2
	④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국정 21-6
2.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업무 1-2-1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	업무 1-2-3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①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업무 1-1-1
	②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업무 1-1-2
	③ 청년·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업무 1-1-3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업무 2-2, 국정 22-5
	② 결제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	업무 2-2
	③ P2P 대출 법제화	업무 2-2
	④ 데이터활용 저해하는 규제 정비	업무 2-2, 국정 22-5
2.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업무 2-2-1, 국정 22-1
	② 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	업무 2-2-1, 국정 22-1
	③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업무 2-1-2
	④ 보험판매 채널 건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업무 2-1-2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그림자규제 정비	업무 1-4-3
	② 검사·제재 혁신	업무 1-4-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업무 2-1-1, 국정 21-5
	②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업무 2-1-1, 국정 21-5
	③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업무 2-1-4
	④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체계 및 DB 구축	업무 2-1-4
2.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①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	업무 2-1-2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업무 2-1-2
	③ 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 확대	업무 2-1-2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업무 2-1-3, 국정 29-4
	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2-1-3
	③ 주택연금 제도개선	업무 2-1-3
	④ 청년·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업무 2-1-3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	업무 1-3-1, 국정 24-4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업무 1-3-1, 국정 22-4
2.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업무 1-3-2
	②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업무 1-3-2, 국정 23-5
	③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 대응	업무 1-3-3, 국정 21-2
	④ 주총 활성화·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지원	업무 1-3-4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금융투자업 영업자유성 확대	업무 2-2-3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업무 2-2-3
	③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업무 2-2-3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기본 방향

- ◇ 가계부채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안정 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기반을 확립하고,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9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① 가계부채 관리강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②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③ 취약차주 안전망 강화	금리리스크 경감형상품 출시 주담대 연체차주 지원강화방안 마련
	④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민간은행 유한책임대출 도입 인센티브 마련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
I-2.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점검조치
	①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기관별 리스크점검실적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실시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다양화
I-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한다.		혁신·중소기업 자금공급 실적
	①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실적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조선·자동차부품업체 만기연장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실적
		환경·안전투자 지원실적
②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동산담보법 개정안 마련	
	선순환 보증지원방안 마련	
③ 청년·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마포혁신타운 개소	
	(신보) 창업기업 정책자금공급 (기보) 창업기업 정책자금공급	

○ (이해관계집단) 기존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여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는 금융회사

-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별로 차주 특성에 맞는 개별 여신심사 모형을 마련하여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

기대효과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	-	-	-	도입	DSR을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 구축 가능	관리지표 도입	보도자료 배포 등

②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I-1-②)

추진배경

○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규모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권(상호·저축·여전) 중심으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

* '18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금감원) :
(소금융권)12.5 (은행)8.6 (상호금융)31.9 (저축은행)31.5 (여전사)18.9

○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고 있어 실물·금융 여건 변화시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 '18년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율(% , 금감원) :
(소금융권)17.5 (은행)11.7 (상호금융)47.0 (저축은행)58.0 (여전사)24.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19.4월)
-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매분기)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19.4월	-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19.6월	-
3/4분기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19.9월	-
4/4분기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
 - 엄격한 심사없이 대출을 이용중 실물여건 변화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영업자

- (이해관계집단)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감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

□ 기대효과

-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	-	-	도입	'18년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에서 일정 비율 차감	'19년 대출취급 계획 / '18년 잔액	금감원

③ 취약차주 안전망 강화(I-1-③)

□ 추진배경

- '18년 中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 시장금리가 상승시,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거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부실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
 - * 취약차주 대출규모(만명, 한은) : ('16) 78.5 → ('17말) 82.7 → ('18.6말) 85.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출금리의 상승에도 ①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②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 출시
 - * ①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
 - * ②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
- 주담대가 연체되더라도, 차주가 주택상실 없이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방안 마련
 - * 주택매각으로 채무상환 후 해당주택에 장기임차거주 등(Sale & Lease Back)
-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변동금리 주담대 또는 제2금융권의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지원 활성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출시	'19.3월	
3/4분기	주담대 연체 시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19.9월	
4/4분기	정책모기지를 통한 분할상환고정금리 전환 지원 확대	'19.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변동금리를 이용 중이거나 부채가 과중한 등 금리상승시 상환리스크가 높은 주담대 차주, 연체우려·연체발생 주담대 차주 등
- (이해관계자)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이 확대될 경우 건전성 악화 영향이 있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기대효과

- 가계대출 차주의 금리변동시 상환부담증가 및 부실위험을 선제적으로 경감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의 원활한 재기와 자활을 지원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출시	신규	신규	신규	상품 출시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한 신규 상품 출시 개시	상품 출시 여부	보도자료
주담대 연체차주 지원강화 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상품 출시	주담대 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보도자료

④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I-1-④)

추진배경

-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를 통해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호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반에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한 데 이어, 민간은행에도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유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19.4월)
-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9.6월)
-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 확대(연중)

* '18년 중 유한책임대출(정책모기지) 1.6조원 공급에서 '19년 중에는 2.0조원 공급으로 공급액 확대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19.4월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19.6월	
4/4분기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 확대(2.0조원)	'19.12월	연중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한정하여 서민·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축소

- (이해관계집단) 유한책임대출을 도입 및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
 - 담보주택 외에 채권추심이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에 소극적일 가능성
→ 주신보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취급유인 제공

□ 기대효과

-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부채 총량증가를 억제
- *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확보 및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민간은행 유한책임대출 도입 인센티브 마련 정책모기지 중 유한 책임대출 공급액		0.17	1.6	2.0	유한책임대출 도입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신규도입 (주신보 출연료 우대 등) 전년대비 확대된 금액을 목표로 제시	시행규칙 개정 주금공 업무통계(매월 집계)	보도자료, 관보게재 등 주금공 업무통계

성과목표 I-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EWS(조기경보시스템) 등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
- 美·中무역분쟁, 브렉시트, 글로벌 경기둔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발굴·관리 강화
-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부실 위험 확산을 차단하여 경제내 잠재된 불안요인 조기 해소 위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점검조치	-	-	15회	15회	대표적인 선제적 점검조치인 (1) EWS(월1회*12개월)와 (2)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 평가(총 3회)의 목표치를 합산하여 산출	(1)EWS모니터링 실시 횟수 + (2)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평가 횟수	(1)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결과 취합 (2)주채권은행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평가 실시 결과 취합

	실적		목표치			
	'18	'18	'19	'20	'21	'22
I-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점검조치	15	15	15	15	15	15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는 기업의 재무개선을 넘어 산업·고용 측면 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상황 발생 가능
 -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대규모·기간산업의 경우 범정부 협의체(예: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정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I-2-①)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시장은 中·EU 등 글로벌 경기 둔화, 美-中 무역분쟁 지속, No-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
 -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향방에 연동하여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등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 이에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실시
- 또한,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은행권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
 - * 은행권 총자산(조원) : ('08년말) 2,023 → ('18.3Q말) 2,768 [연평균 3.3% 증가]
비은행권 총자산(조원) : ('08년말) 1,031 → ('18.3Q말) 2,582 [연평균 9.9% 증가]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미시건전성 규제·감독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비은행권 전반에 걸친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에 초점
 - * 개별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쏠림현상·업권간 연계성 등으로 시장 충격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 '구성의 오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대응체제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EWS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 지속
 - 필요시 既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여 시장불안 확산을 적극 차단

- 비은행권을 포함한 소금융권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유관기관* 합동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운영

* 금융위(주재), 기재부, 금감원, 예보, 민간전문가(연구원 등) 등으로 구성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19.1월) 후속조치 점검·발표, 시스템리스크요인 식별·분석,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자문 등 수행
- 거시건전성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공동연구 등 수행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분기중 1회	
2/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분기중 1회	
3/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분기중 1회	
4/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분기중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확대를 최소화
- (이해관계집단)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기관간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불안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 마련

□ 기대효과

- 금융시장의 급변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역량 및 대응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식별·분석·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공통)	9회	13회	대경장 금상점 15회	거금, 금상점 등점검 회의 8회	'16~'18년 개최실적, 최근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산정 * 거시경제금융회의/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개최되는 회의로서 구체적인 목표 산출에 한계	개최 실적	보도자료 등 점검회의 개최 실적 증빙 자료 등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공통)	12회	12회	12회	12회	월 1회 실시 * 12개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결과
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신규	신규	신규	4회	분기별 1회씩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모여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	개최 실적	보도자료 등 점검회의 개최 실적 증빙 자료 등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I-2-②)

□ 추진배경

-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부실 확산을 차단하여 경제내 잠재 불안요인 해소 필요**
- 기업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기업그룹 관리)** 금융권 여신이 많은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채무구조평가**를 통해 대기업그룹의 **부실위험에 사전 대응**
 - *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
- **(개별기업 관리)** 주채권은행이 **개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추진
- **(부실징후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방식**을 부채투자 등으로 다양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주채무계열 선정 및 채무구조평가 실시	'19.5월	
3/4분기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실시	'19.8월	
4/4분기	개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실시	'19.12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다양화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구조조정 대상 기업** 채무구조 개선 및 **채권은행** 건전성 제고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지역사회** 침체를 최소화

□ 기대효과

- 주채무계열 채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선제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시장안정화에 기여**
-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공급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연3회	대기업그룹, 개별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연 3회 별도의 평가를 통해 취약계열 및 기업을 선정하여 관리	평가 실시 결과 및 취약계열, 기업 선정여부 확인	주채권은행 채무구조평가 및 신용위험평가 실시 결과 취합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다양화	신규	신규	신규	도입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업맞춤형 지원을 위한 투자 시행	운용방식 다양화	운용사(성장금융)로부터 결과 취합

성과목표 I-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활성화 촉진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주력산업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마련
 -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편)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대출·보증심사체계 개선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기업의 조기안착 유도를 위해 창업 지원자금 공급 및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혁신·중소기업 자금 공급 실적	-	-	-	8,99조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창업·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감안하여 '19년도 목표치 설정함	정책금융기관 자료 합산 *산은, 기은, 신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민간 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적극적 협업 및 지원이 가능한 환경 조성 추진
 - 주력산업 및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공급 여건 조성을 위해 국책은행 경영평가 개편 및 임·직원 면책 부여

-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지원체계 개편의 조기정착을 위해 은행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의견조정 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혁신금융 추진방향('19.3.21일)
-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19.1.23일)
-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18.8.9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I-3-①)

□ 추진배경

-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난 지속에 따른 자금애로 해소 및 조선업 회복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자금수요 증대
- 주력산업 활력제고·신산업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투자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력산업 유동성 공급)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맞춤형 자금공급 실시
 - [조선·기자재] ① 제작금융 상생보증(신·기보 0.1조원), ② 정책금융 대출·보증 만기연장(1조원) 등 실시
 - [자동차부품] ①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1조원), ② 우대보증(신·기보 1조원), ③ 정책금융 대출·보증 만기연장(1.3조원) 실시
-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전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분야 투자에 3년간 10조원 공급(산은 7조원, 기은 3조원)
 - [환경·안전투자 지원] 기업현장의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년간 5조원 공급(산은·기은 각 2.5조원)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조선·자동차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가동	'19.1월 '19.3월	
2/4분기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조선·자동차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계속	
3/4분기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조선·자동차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계속	
4/4분기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조선·자동차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이해관계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 기대효과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단기자금 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조선기자재 맞춤형 금융지원				
	제작금융 상생보증(신기보)	예비비	150	-
자동차 부품업체 맞춤형 금융지원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신보)	본예산	-	500
	우대보증 프로그램(신기보)	예비비	5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조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	-	-	-	0.04	■ 3년간 총공급액(0.1조원)의 40% -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행 1차년도('19년)에 집중배정	제작금융 상생 보증 지원금액	신보 제출자료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실적	-	-	-	0.35	■ 3년간 총공급액(1조원)의 35% -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행 1차년도('19년)에 집중배정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액	신보 제출자료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	-	-	0.3	■ 3년간 총공급액(1조원)의 30%	우대보증 지원 금액	신보 제출자료
조선·자동차부품업체 만기연장	-	-	-	2.3	■ '19년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도래 규모 추정	만기연장 금액	산은·기은·신보 제출 자료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실적	-	-	-	4.0	■ 3년간 총 공급액(10조원)의 40% -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행 1차년도('19년)에 집중배정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금액	산은·기은 제출 자료
환경·안전투자 지원 실적	-	-	-	2.0	■ 3년간 총 공급액(5조원)의 40% -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행 1차년도('19년)에 집중배정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금액	산은·기은 제출 자료

②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I-3-②)

□ 추진배경

- 담보력과 과거 재무성과가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 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혁신·중소기업 지원에 적합하게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출) 부동산담보, 과거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 구축
 -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은행권의 동산담보물 평가 인프라 마련
 - 기술·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 : '19년중 통합여신모형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보증)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신규보증 여력을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차별화
 - (창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속 확대(16조원)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도 확대(600억원)
 - * 지원규모('18년→'19년) : [보증공급] 15→16조원, [보증연계투자] 400→600억원
 - (성장) 혁신·기술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선별·특화지원 프로그램* 가동
 - * [보증한도 확대] 운전자금 30→최대 70억원, 시설자금 100→최대 150억원 등
 - (성숙) 성숙기 기업은 회사채·유동화증권 발행, 투자유치 등 민간 자금조달 분야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4분기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안 마련 · 은행권 동산담보 공동DB 구축	'19.6월	
3/4분기	· 효율적인 정책보증 지원방안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19.9월	
4/4분기	· 선순환 보증지원 방안 발표 및 시행 · 통합여신모형 유효성 평가, 검증 등 실시 → 가이드라인 마련	'19.10월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창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 (이해관계자) 법무부(동산담보법 소관부처), 시중은행, 보증기관, 신용정보원(통합여신모형 유효성 평가) 등

□ 기대효과

- 창업·혁신기업이 성장단계와 경영전략에 적합한 맞춤형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책보증 자금을 통한 창업·혁신기업 지원이 확대 등 효율적인 정책보증 지원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동산담보법 개정안 마련			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산담보법 등 개정안 마련	마련방안 여부 확인	법무부,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선순환 보증지원방안 마련			방안 마련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방안 마련	마련방안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③ 청년·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I-3-③)

□ 추진배경

- 신보 마포사옥을 활용하여 우수 대학이 밀집한 서울 강북권에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 마련
- 창업기업 안착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AC·VC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스타트업 선발 및 금융·컨설팅·해외진출 등 성장에 필요한 쏠분야를 최장 3년간 지원
 - 핀테크, AI, 블록체인 등 핵심 선도분야 전문보육 프로그램 운영, 제작·실험 전문장비* 배치 등 혁신창업 인프라 제공
 - * 제작공간(메이커 스페이스) 및 바이오랩·디바이스랩 등
 - 예비 창업자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창업 지원기관 합동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
 - * 창업진흥원, KOTRA 및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19년~'23년) 총 190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공급(창업자금: 기은 100조원, 신보 90조원 등)

< '19~'23년 신보·기은의 창업자금공급계획(조원) >

	'19	'20	'21	'22	'23	계
신보 보증	16	17	18	19	20	90
기은 대출	20	20	20	20	20	100
계	36	37	38	39	40	150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4분기	· 마포 청년혁신타운 리모델링 공사 착공 · 기은-신보의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공급	'19.6월 계속	
3/4분기	· 기은-신보의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공급	계속	
4/4분기	· 마포 청년혁신타운 부분개소 및 운영 개시 · 기은-신보의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공급	'19.12월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창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
- (이해관계자) 정책금융기관(신보, 산은, 기은 등),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및 관계부처(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 기대효과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startup ecosystem)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창업·혁신기업이 **성장단계와 경영전략**에 적합한 **맞춤형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결산)	'19 (예산)
신용보증기금			
① 산업금융지원(2431)			
업무용건물(305)		6	1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마포 청년혁신타운 개소			공사 착수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완료 및 리모델링 공사 착수	공사 착수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신보) 창업기업 정책 자금 공급		15	16	향후 5개년 공급목표액(190조원)을 연도별로 배분	자금공급 공급실적	기은, 신보 내부자료
(기은) 창업기업 정책 자금 공급		20	20			

전략목표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본방향

◇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혁신도전자 출현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각 금융업권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0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② 결제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 마련
	③ P2P 대출 법제화	P2P금융 관련법의 종합적 대안마련
	④ 데이터활용 저해하는 규제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II-2.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업 경쟁도 평가회의 개최 및 결과발표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2개사 이하 인터넷은행 신규예비인가
	② 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③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특화보험사 설립허가
	④ 보험판매 채널 진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II-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	
	① 그림자규제 정비	행정지도·자율규제 정비과제 이행
	② 검사·제재 혁신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 마련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1) 주요 내용

핀테크 혁신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 (규제 샌드박스) 수요자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법률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차질없이 준비
- (결제인프라 혁신) 금융결제 시스템의 혁신적 개방,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등으로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촉진
- (P2P 대출)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 *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 허용
- (금융 데이터경제)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신용정보법 개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	신규	신규	25	'19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목표 지정건수 설정	혁신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보도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제도개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수혜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
- 원활한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안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II-1-①)

추진배경

-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4.1일 시행)
 -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장테스트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예정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4.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 신속 마무리**(3월)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실시**(1월)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보고 등을 거쳐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정**(4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제정	'19.3월	
2/4분기	1,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9.6월	
3/4분기	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9.7월	
4/4분기	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 기대효과

-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 이용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등 효과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핀테크 지원 사업(III-3-일반재정①)			
① 핀테크 지원 사업(1134)	일반회계	0	79
▪ 핀테크 지원 사업(301)		(0)	(79)
		0	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5	'19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목표 지정건수 설정	혁신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보도자료 등

② 결제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II-1-②)

□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
 - * 국내외 송금, 상거래 결제, 금융투자 등을 위한 이체 등 → 일상적인 생활금융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금융플랫폼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과 경직적 규제 체계 등으로 금융변혁을 이끌기에는 한계 → 신용카드 위주 결제와 단순 마케팅 경쟁 지속
- 현재의 낮은 금융결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핀테크 사업자, 금융회사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 혁신
 -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추진
 - * (예)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 수행(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결제계좌 관리(종합지급결제업) 등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마련	'19.2월	
2/4분기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관련 세부방안 마련	'19.4월	
	전자금융업 전면 개편 방안 확정	'19.6월	
4/4분기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시행	'19.12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19.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 (이해관계집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기대효과

-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
- 금융서비스 고도화로 일상 생활에서 금융 편리성도 대폭 개선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시행	이용기관 확대, 이용료 조정 등 핀테크 기업도 결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시스템 구축 및 시행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시행	보도자료 등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 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마련	새로운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전자금융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종합개편방안 마련	방안 발표	보도자료 등

③ P2P 대출 법제화(Ⅱ-1-③)

추진배경

-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 다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 * 공시 강화, 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17.2월~)하였으나 법적 한계
 -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의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법안을 토대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제출
 - *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
 - P2P대출 관련 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및 통과 추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19.2월	
2/4분기	P2P 금융 관련 법안의 종합적 대안 마련·제출	'19.4월	
3/4분기	P2P 금융 법제화 노력 지속	'19.9월	
4/4분기	P2P 금융 법제화 및 하위법규 마련	'19.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P2P업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차입자 및 투자자) 등
- (이해관계집단) P2P업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차입자 및 투자자) 등

기대효과

- P2P 금융의 건전한 육성으로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 P2P업체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으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강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P2P 금융 관련 법의 종합적 대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마련	P2P금융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대안 마련·제출	의안정보시스템, 보도 자료 등

④ 데이터활용 저해하는 규제 정비(Ⅱ-1-④)

추진배경

-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
 -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 데이터 인프라 부재* 등이 요인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의 Scale-Up이 지연
 - *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17)
- 적극적인 데이터의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
 - 금융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과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 * 비식별 조치된 금융 데이터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 ** 데이터결합, 적정성 평가 등 기능뿐만 아니라 분석시스템, 중개플랫폼 등 빅데이터 인프라 연계·지원 시스템
-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을 활성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19.6월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용 시스템 구축		
4/4분기	금융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19.12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소규모·창업기업 등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가능
-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상품이 개발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가

□ 기대효과

- 금융회사에 집중된 데이터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대형 금융사의 정보독점 및 이를 통한 시장영향력 집중이 완화
 - 정보 우위에 기반하여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
- 고객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이 활성화될 경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요 등에도 대응
 - 전후방 연관효과로 고부가가치의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형성되어, 임금·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신용정보법 개정	신규	신규	신규	개정 완료	-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보도자료 배포

성과목표 II-2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1)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 혁신형 금융산업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하여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령 시행
-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18.12.3일), 일본·영국 등 해외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②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참가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방안 마련

③ 혁신적 상품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보험사 도입

④ 보험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 충족 및 판매채널 건전화 위해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금융업 경쟁도 평가 회의 개최 및 평가결과 발표	신규	신규	진입 장벽 완화 방안 발표	회의 개최 및 결과 발표	중소금융분야 진입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경쟁도 평가가 중요한 절차	회의개최	보도자료 배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우리경제의 저성장국면 진입 등 향후 금융시장 전망 악화,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 우려로 신규 금융회사 설립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
- 경쟁도 평가 결과 등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고려하여 관리과제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II-2-①)

추진배경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평가(18.12.3일) 결과 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
 - 정량분석(시장집중도), 보조분석(산업구조·재무지표 등), 정성평가(설문조사)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 고려
 - 신규진입 형태로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 신규 인가 예정
 - *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음
- ①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 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
- ②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 비교시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
- ③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사 이하에 대해 신규 예비인가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매뉴얼 확정	'19.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 접수	'19.3월	
2/4분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결과 발표	'19.5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자)의 은행 접근성 개선 및 연관된 핀테크기업의 발전

- 중금리대출 공급 활성화 노력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혜택

* '19.1월부터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 자체 중금리 신용평가모형도 개선·고도화 해나갈 예정

-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 발전·해외진출 촉진

* 강소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은 케이뱅크와의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직원인 2배 이상 증가, 필리핀·일본 등 진출

○ (이해관계자) IT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에 자극받아 기존 은행의 쇄신과 혁신이 촉진되는 모습 기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선 노력 확산

□ 기대효과

○ (이용 편의성 제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고 금융상품의 지형 확대

○ (금융부담 경감)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져 소비자 금융부담 경감

* (대출)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은행권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하락('17.7월 4.56% → '17.8월 4.47% → '17.9월 4.39%)하는 모습이 나타남

* (예적금) 인터넷전문은행의 정기에금(1년만기) 금리는 4대 시중은행보다 30~90bp 높은 수준(은행연합회 '18.11월 공시 기준)

○ (산업 발전) ICT기업의 추가 투자로 핀테크기업 및 연관산업(HW, SW, R&D)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인터넷 진입 장벽 문 완화 은행 방안 신설 발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18.12.3일), 해외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2개사 이하)	보도자료 배포

② 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II-2-②)

□ 추진배경

- 진입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치우쳐 보수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금융산업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
-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참가자의 진입을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 등 특화금융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법령 등 제도적 장치 정비 필요
- 금융소비자가 혁신적 서비스, 가격 경쟁에 따른 혜택 등을 충분히 누리도록 정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은행, 보험, 자본, 중소기업 등 전업권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또는 경쟁도평가 실시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
- ②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 판매하는 특화보험사 활성화 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10~30억)하는 보험업법 개정 추진
- ③ 투자중개업체의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에 “전문사모 투자중개업” 규정 신설
- ④ 중소기업과 증권업 진입완화 필요성 검토 위한 중소기업 경쟁도 평가 및 증권업 경쟁도 평가 실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	'19.1월	
	특화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19.2월	
	증권업 경쟁도 평가 회의	'19.3월	
2/4분기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회의	'19.4월	
	전문사모 투자중개업 규정 신설	'19.5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진입규제 정비로 특화금융사 등이 설립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가격적인 측면의 혜택 향유 가능
-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 확대로 기존 금융회사들은 보다 높은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

□ 기대효과

-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가격 경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신규	신규	은행·부동산신탁업 경쟁도평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특화보험사 원활한 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요건 개정 필요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 배포

③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II-2-③)

□ 추진배경

- 진입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치우쳐 보수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금융산업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
-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참가자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당국의 묵인하에 기존 금융회사가 지대(地代) 향유
- 금융소비자는 편리하고 혁신적 서비스, 가격 경쟁에 따른 혜택 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보험사(채널·종목) 설립을 활성화
-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영위하거나 및 온라인 등 채널에 특화된 특화보험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허용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특화보험사 설립 예비허가	'19.1월	
4/4분기	특화보험사 설립 허가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보험소비자(수혜자), 설립허가를 받는 보험회사(이해관계자) 등

□ 기대효과

-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함으로써,
- 경쟁촉진이 필요한 일반 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특화보험사 설립 허가	신규	신규	신규	설립 허가	채널 및 종목에 대한 특화보험사 설립 허가	특화보험사 설립 허가	보도자료, 금융위 의결

④ 보험판매 채널 진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II-2-④)

□ 추진배경

-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여 보험상품을 권유·설명하는 모집채널의 중요성이 큼
 - 소비자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03년경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 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급격히 성장
 -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
 - * '18.6월말,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GA 3개
- 그러나, 설계사·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2년 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를 넘는 등 계약유지율이 낮음
 -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속 증가
 - * 금융위 상정된 대형GA 제재건수 : ('16) 15건 → ('17) 24건 → ('18) 28건
 - GA의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
 - * (예)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상 상피내암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모든 암은 다 보장된다고 설명하여 보험금 지급 분쟁 발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 구축

-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①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현행 “모집경력시스템”을 소비자·GA·보험설계사 등도 조회 가능토록 확대 개편하고, ②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우수설계사 해당여부 등 활용가능한 정보도 확대

- 보험계약 권유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 의무화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개선>



○ GA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

-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험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현재 생·손보험회별 공시)
- 대형 GA(500인 이상, 57개('18.6월말))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
-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 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실적을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
-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

○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 * (교육주기·시간)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 (의무교육 대상)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 설정 (교육내용) 모집 관련 윤리,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e-클린보험 시스템 및 통합GA공시 시스템 개발	'19.1월	
2/4분기	- e-클린보험 시스템 및 통합GA공시 시스템 고도화	'19.5월	
3/4분기	-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19.7월~	
	- GA 통합 공시시스템 운영	'19.9월	
	- 대형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 불완전판매 집합교육 시설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 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 (이해관계자) GA, 보험설계사 등은 신뢰도 관련 객관적 정보 등이 투명하게 대외공개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권유를 자제하고, 보다 높은 경쟁압력에 직면

□ 기대효과

- 알권리 확대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
- 보험설계사 및 GA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보험판매 품질' 제고 및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신뢰 개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규	신규	신규	구축 및 운영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보도자료 배포

성과목표II-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과도한 검사·제재나 행정편의적·암묵적 규제 등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 개선

○ 금융감독, 검사·제재 등의 전반적인 혁신 방안 마련

- 비명시적 행정지도 등의 개선,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적극 제공 등으로 금융규제 불확실성 제거
-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 개선, 사후 검사품질관리 강화
- 인·허가, 제재 관련 요건·절차 명확화 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마련	금융감독, 검사·제재 등의 전반적인 혁신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위-금감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그림자 규제 정비(II-3-①)

□ 추진배경

- 경영이나 영업행위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숨은 '그림자' 규제는 일선 금융회사의 자율경영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 금융규제 혁신 등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당국의 행정편의적·암묵적 규제·개입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그림자 규제 정비 TF 운영, ~'19년 上)
- 금융당국 행정지도,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를 全數점검* 하고, 존속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규화·폐지·개선 추진
- * 19.3월 기준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39건,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가 점검 대상이며, 그림자규제 TF 운영을 통해 이중 법규화·폐지·개선할 과제를 선정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행정지도·자율규제 현황 파악	'19.3월	
2/4분기	그림자규제 정비 TF 운영	'19.4~6월	
	행정지도·자율규제 정비과제 확정(법규화·폐지·개선)	'19.6월	
3/4분기	행정지도·자율규제 정비 이행	지속	
4/4분기	행정지도·자율규제 정비 이행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행정지도·자율규제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각 규제의 제·개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위·금감원과 각 업권 협회, 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

□ 기대효과

- 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림자 규제 정비를 통해 금융규제 혁신 등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경우,
 -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행정지도·자율규제 정비과제 이행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이행 완료	그림자규제 TF에서 '19년말까지 폐지·개선키로 한 과제는 이행을 완료 (다만, 법 개정 등 법규화 과제나 장기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의 완료시기를 설정해 그 시기까지 완료)	행정지도, 자율규제 폐지 또는 개정여부 확인	보도자료 금융규제민원포털 각 협회 홈페이지

② 검사·제재 혁신(II-3-②)

□ 추진배경

- 금감원이 '15.2월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한다고 했다가, '18.7월 재개방침을 발표하고 종합검사를 실시

* 종합검사 실시횟수 : ('15년)15회 → ('16년)4회 → ('17년)0회 → ('18년)10회

- 이에 따라 과도한 검사와 그로인한 제재로 금융회사들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검사) 기존 '저인망식' 종합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 - 개선유도" 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보호(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내부통제(준법경영, 금융사고 예방) 등

- 금융위·금감원 간 협의를 통해 종합검사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시행과정에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 (제재) 신중 조치수단(준법교육 대체 등)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고의·중과실 제외)은 면책·감경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 금융위·금감원 협의	'19.1~3월	
2/4분기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 확정·발표	'19.4월	
	신사업분야 지원 관련 면책 근거 마련 규정 개정	'19.6월	
3/4분기	금감원 종합검사 시행과정 모니터링	연중지속	
4/4분기	금감원 종합검사 시행과정 모니터링	연중지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
- (이해관계집단) 검사·제재를 담당하는 금감원·금융위, 공동검사 기관인 예보·한은

□ 기대효과

- 핵심부문 위주의 검사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
-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감경·면책으로 금융회사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마련	기존 저인망식 검사와 차별화된 종합검사 시행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발표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규정 개정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감경·면책 근거 마련	규정 개정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여부 확인

전략목표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 서민금융공급 확대,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 운용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1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금융소비자제도 개선노력
	②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③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④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체계 및 DB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금융DB 구축
III-2.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발표한 대책 수	
	①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③ 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 확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산출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III-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사잇돌 대출 누적 공급액 초저금리 대출지원
	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③ 주택연금 제도개선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마련 주택연금 연간 지급액
④ 청년·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청년 전월세지원 프로그램 마련	

성과목표 III-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새로운 권리와 제도 도입
-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추진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효율적인 지원대상 선정·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견을 토대로 장단기 관행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망라한 '종합방안 발표'로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가능	방안 발표(보도자료 배포) 여부	보도자료(금융위 홈페이지)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국회 설명 등 쟁점해소 노력을 지속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III-1-①)

□ 추진배경

- 업권별 규율체계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권리와 제도 도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부 금융상품에 도입된 판매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쏘 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피해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와 제도를 신설

*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지속		
2/4분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지속		
3/4분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지속		
4/4분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지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 기대효과

-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 준수 실효성 제고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소비자권의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금융소비자 제도 개선 노력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 입법 예고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 국회 제출	25	3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국회의 의결 및 의원실 방문 횟수로 산출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 횟수 및 의원실 방문 횟수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원실 설명자료 등

②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Ⅲ-1-②)

□ 추진배경

-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비자)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금융회사) '회사 수익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영업관행이 회사 내부에서부터 관리·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당국) 소비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강화
- (보호인프라) 소비자가 언제든 '믿고 기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및 인프라 조성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금융소비자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19.1월~3월	
2/4분기	금융소비자종합방안 발표	'19.6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 기대효과

-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발표	관리과제(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달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발표'를 목표치로 설정	방안 발표(보도자료 배포) 여부	보도자료(금융위 홈페이지)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Ⅲ-1-③)

□ 추진배경

- 사회적금융시장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18년 1,937억원 → '19년 2,430억원 목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중진공·소진공 등 공공기관 정책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신탁·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도 확대
-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 신설(신보, 1,0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지신보, 150억원) 등을 통해 보증지원 확대
 - * 보증수수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유도
- (투자) 한국성장금융(200억원)와 한국벤처투자(220억원)에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대상 임팩트 투자* 실시
 - * 재무수익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임팩트)를 동시에 추구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사업 개시(소진공)	'19.1월	
2/4분기	2차년도 사회투자펀드 조성 완료(성장금융)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 신설(신보)	'19.6월 '19.6월	
3/4분기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서민금융진흥원) 19년도 소셜임팩트 펀드 조성 완료(벤처투자)	'19.7월 '19.9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가치 및 금전적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이해관계집단)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신규	신규	1937 억원	2430 억원	공공부문에서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공급	사회적금융 담당 기관들의 지원금 합산	각 기관들을 통해 현황 자료 취합

④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및 DB 구축(Ⅲ-1-④)

□ 추진배경

- 효율적인 지원대상 선정·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력, 업종, 지원자금 규모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온라인 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동 활용(19.3분기)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DB 구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회적 금융 전용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19.2분기)
 - * 자금공급자(공공·민간)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轉貸)·투자하거나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 수행(예: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	'19.3월	
2/4분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공유	'19.6월	
3/4분기	온라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구축	'19.8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금융 담당기관
- (이해관계집단) 사회적금융 관련 정책담당자 및 사회적금융, 사회적 경제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자

□ 기대효과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들 간 평가기준의 통일성·객관성 확보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들의 위탁 및 지원기관 선정에 활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구축	신규	신규	신규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사회적가치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체계 구축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시스템 구축시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통해 공유	
사회적금융DB 구축	신규	신규	신규	구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	서민금융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DB 구축시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통해 공유	

(1) 주요 내용

- 예금·대출, 보험, 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및 만족도 제고
 - 보험 신뢰도 회복 및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 약관을 개선
 -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부당한 금리산정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새로운 잔액 COFIX제도를 도입
 - 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카드이동 서비스, 대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등을 마련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발표한 대책 수	-	-	-	4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은 전체 금융업권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개별 이슈별로 법령 개정, 서비스 신규 실시 등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지므로,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 숫자를 통해 전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	대책 발표(보도자료 배포) 수	보도자료(금융위 홈페이지)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II-1.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발표한 대책 수	4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보험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반대가 가능하므로, 의견수렴 등 적극적 소통 추진
-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관련, 은행의 강화된 정보제공 의무 및 행정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새로운 잔액 COFIX제도의 활용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카드·대출·계좌(제2금융권) 이동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적극 조율하여 원활한 시스템 구축
 - * 카드사·가맹점(카드이동 서비스), 은행(대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III-2-①)

□ 추진배경

- 그간 저금리 영향 등으로 사업비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왔으나, GA영향 확대 등으로 인한 과다 사업비·모집수수료 문제제기 지속
- 또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보험약관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내용 등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유발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수정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4분기	보험약관 제도개선 방안 마련	'19.4월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19.6월	
4/4분기	보험약관 제도개선 방안 시행	'19.10월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시행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보험료 인하 및 해약환급금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권익이 증대되며, 중·장기적으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건전성도 제고
- (이해관계집단) 보험회사, 모집종사자 등

□ 기대효과

- 보험상품의 합리적인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제도 마련으로 보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모집질서를 확립
- 또한,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 이해가능성을 제고하여 보험분쟁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	-	신규	개선 방안 마련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도자료 등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	-	신규	개선 방안 마련	보험약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도자료 등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Ⅲ-2-②)

□ 추진배경

-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실제 대출과정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대출금리 산정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성 제기
 -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음에도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또한, COFIX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
- ⇒ '18.7월부터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금융 소비자에게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가 명기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
 -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소비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를 개선
-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

- 은행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

○ 새로운 잔액 COFIX도입

- 은행이 대출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는 새로운 잔액 COFIX를 산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 발표	'19.1월	
	○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19.3월	
2/4분기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9.6월	
3/4분기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산출	'19.7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출금리 산정 관련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어 기초정보 반영여부 확인 등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협상력 향상
- (이해관계자) 은행권의 대출금리 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부당산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성 등 책임이 높아지는 효과

□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권리도 실효성 있게 행사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	-	신규	모범규준 개정	금리산정 내역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 개정	개정 여부	보도자료 배포, 언론보도 등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	신규	시행세칙 개정	비교공시 개선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	개정 여부	보도자료 배포, 언론보도 등
새로운 COFIX 산출	-	-	신규	지표 산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산출	산출 여부	보도자료 배포, 언론보도 등

③ 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 확대(Ⅲ-2-③)

□ 추진배경

-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는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계좌이동은 은행권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자동납부 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없음
- 일부 은행이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소비자가 대출조건이 유리한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출원리금 확인 등을 위해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 존재

⇒ 금융소비자가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 카드 등 금융업권에 걸쳐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소비자가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여 불필요하게 등록된 카드는 즉시 해지하고, 필요 시 타 카드로 자동납부 내역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 카드 자동납부내역 조회('19년 말), 해지 및 변경('20년 이후)
- (대출이동 서비스) 금융소비자가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이동 서비스 구축*
* 신용대출('19년 말), 담보대출('20년 이후)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권역 내 계좌이동 서비스를 우선 실시 후, 은행권-제2금융권 간 통합 계좌이동 서비스로 확대
* 제2금융권 권역 내 계좌이동('19년 말), 은행권-제2금융권 통합('20년 상반기)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대출이동 서비스) 추진계획 발표 및 장관님 현장방문 행사 개최	'19.6월	
	(카드·제2금융권 이동) 추진계획 발표 및 장관님 현장방문 행사 개최	'19.6월	
3/4분기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내 계좌이동서비스 시범실시(Payinfo 채널)	'19.9월	
4/4분기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내 계좌이동서비스 본격실시(Payinfo 및 영업점 채널)	'19.12월	
	(대출이동 서비스) 신용대출 이동서비스 실시	'19.12월	
	(카드이동 서비스) 카드 자동납부내역 조회서비스 실시	'19.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관련 업무부담 경감 등
- (이해관계집단) 카드사·가맹점(카드이동 서비스), 은행(대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의 편의 증대)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타 카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권·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편리하게 주거래은행 이동 가능
- (은행 업무효율성 제고) 대출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금 유용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은행직원의 대환대출 관련 업무부담 경감
-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신규	구축	'19년 중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구축 여부 확인 보도자료 등

(1) 주요 내용

-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
-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 은퇴 노령층 노후보장 방안 확충,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지원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	-	마련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마련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 마련 여부	보도자료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소비자에게 수혜가 되는 반면, 금융사 부담은 적어 갈등 요인 미미
- 신용평가 역량이 미비한 신규 시장을 조성하거나(중금리), 공적재원 투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사 등의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함
-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책수혜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III-3-①)

추진배경

- 금리구조 단절화로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 이용
- 이로 인해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 금융기관도 중신용자 신용평가 정보·노하우 부족으로 취급 주저

⇒ 중금리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증보험 연계 사이트들 대출 상품을 출시('16.7월*)하고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 (은행)'16.7월, (저축은행)'16.9월, (상호금융)'17.6월
- **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많을수록 저축은행·여전·신협법상 적용되는 대출규제 준수가 용이해지도록 업권별 규정 개정
- '18.10월, 보다 정교한 정책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 발표
- ①사이트들 대출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3.15조원 → 5.15조원)하고 지원요건(소득·채직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출 공급

- ②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여 중금리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로 공급기반 확대
- ③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지원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 중금리(사잇돌) 대출 상품 출시	'18.3월	
	사잇돌대출 지원기준(소득·재직기준) 완화		
	사잇돌 대출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4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및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를 위한 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18.6월	
1~4분기	비금융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장기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 국민
- (이해관계자)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여전사 등 금융기관

기대효과

- 중신용자 등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사잇돌 대출 누적 공급액(조원)	0.37	1.33	3.16	5.15	'18년 공급액 18,340억원 대비 8.5% 증액(1.99조원 공급목표)	공급실적 합산	보도자료 등

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Ⅲ-3-②)

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초저금리 대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1.8조원)

* 가산금리 항목 : 신용·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 '19.1.28일 기준 1.92%

②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금리 1%p 우대, 0.2조원)

③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특화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을 마련하여 지원(0.6조원)

구분	①영세 자영업자	②데스밸리 자영업자	③재창업 자영업자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이하 자영업자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등 영업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년 이내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보증비율	95%	100%	100%
보증료율	0.3%p 인하	0.5%p 인하	0.5% 고정요율
보증한도	3억원	1억원	1억원
보증심사	성장성·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완화된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증기한	5년	5년	5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초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프로그램 개시	'19.1월	
2/4분기	·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개시	'19.3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이해관계자) 정책금융기관(신보, 기은 등), 시중은행 등

기대효과

-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존율 제고 및 소득 증대 기대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결산)	'19 (예산)
산업금융지원(2400)			
①중소기업은행 출자(2415)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304)	일반회계	0	2,000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초저금리 대출 지원					1.8조 원 공급	예산사업상 공급 목표 달성(1.8조원)	지원실적 확인	기은 제출자료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출시	보증기관, 은행권 합동의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출시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③ 주택연금 제도개선(Ⅲ-3-③)

추진배경

- 고령화 진전에 따라 기대여명은 증가하고,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은퇴연령은 낮아지면서 은퇴 노령층의 노후보장 방안 확충 필요
- 주택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부족한 노령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택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가입대상 확충, 보장성 확대, 이용시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 가입연령(60세 이상) 및 가입주택 가격상한(현재 시가 9억원) 완화
 -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
 -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 허용을 통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방안 구체화	'19.6월	
3/4분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19.9월	
4/4분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국회제출)	'19.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한 노령층 주택보유 가구

기대효과

-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소득 확보 및 생활 안정에 기여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프로그램 마련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주택연금 연간 지급액	0.6	0.7	0.9	1.0	'19년 중 방안마련 등에 따른 지급액 증가수준 측정	주택금융공사 공급실적	통계 산출

④ 청년·대학생 주거부담 완화(Ⅲ-3-④)

추진배경

-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교육비·주거비 부담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이 지속
- 소득능력이 낮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이 지원이 부족하거나 몰라서 과중한 주거부담을 지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우려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금공 보증을 통한 저금리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 청년의 소액·월세 중심 주거 특성을 반영하여 ①소액보증금 대출, ②월세자금 대출, ③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 지원
- 청년층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해 웹툰, SNS채널(유튜브 등) 교육 등 청년 생활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개발·제공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년층 전월세 금융 지원프로그램 마련 방안 협의 등	'19.3월	
2/4분기	지원 프로그램 출시 및 운영	'19.6월	
4/4분기	청년수요 맞춤형 교육 개발 제공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부모와 독립하여 대출 등을 통해 주거비를 조달하는 전·월세 청년층
- 금융이용 이력이 부족하고 금융이해도가 낮은 청년층

□ 기대효과

- 전·월세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금융이해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규	신규	신규	프로그램 마련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구·구축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전략목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기본 방향

- ◇ 코스닥 시장 등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한 진취적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9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와 노력
	① 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	금융그룹감독 체계정비 추진정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운영의 충실도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추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추진
IV-2.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유관기관 협업강화 특사경 활용방안 마련
	②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재 신설
	③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 대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④ 주총 활성화·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지원	주주총회 내실화방안 마련 5%를 개선 연구용역 추진
IV-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자산규모
	① 금융투자업 영업자율성 확대	국내증권사 총자산 규모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실적
	③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자산운용업 규제 개선방안 마련

(1) 주요 내용

□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등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 ①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내 대표회사 중심으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금융계열사 참여)하여 그룹리스크를 관리토록 함
 - *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영위 그룹) 예)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금융그룹
- ②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동반부실 위험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	-	-	· 의원실 설명 10회 ·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3회 · 시행령안 마련	금융분야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개정 등 제도화 노력을 목표치로 설정	· 의원실 설명 횟수, 토론회 등 개최 건수, 시행령안 내부자료 마련 여부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23
IV-1.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	· 의원실 설명 10회 ·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3회 · 시행령안 마련	-	-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그룹감독) 그룹차원의 새로운 규제(예: 자본규제) 도입으로 언론 업계, 국회로부터 중복·과다규제 주장* 등 비판 소지

* 개별 금융회사에 건전성 규제가 이미 적용되므로 그룹차원 규제는 중복규제라는 주장

- ① 주요 금융선진국이 이미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한 점,
② 개별 금융법이 포착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점 등에 대해 의원 등을 설득하여 제도도입 여건 조성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자본 중복계상, 내부거래 편중,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체계적·일관된 정비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필요함을 강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야당과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심사요건 강화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IV-1-①)

□ 추진배경

-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도입*,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추진중 ※ 국정과제 24-4

* IMF는 '13년 금융부문평가(FSAP)시 금융그룹 위험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개선 촉구

- '18년 도입방안 발표(1월), 모범규준 시범적용*(7월), 법안발의(6, 11월) 등 제도의 기본 골격 마련

* '18.7월부터 7개 금융그룹 대상 시범운영 중(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 금년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금융회사·금융그룹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간 제도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금융그룹 감독체계 정비검토 병행

- 일관성 있는 감독,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개별 업권별·금융그룹 유형별*로 상이한 감독기준 정비방안 검토

* 예) 금융지주그룹, 금산결합 금융그룹(금융+산업) 등간의 규제차익 방지

- (모범규준 운영 내실화) 모범규준의 지속적인 적용* 등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제도안착 효과 도모

* 모범규준 개정·연장, 감독대상 지정, 금융그룹 임원·실무자 교육 등 금융그룹감독 여건 조성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금융그룹감독법안」 토론회 참여	'19.3월	
2/4분기	금융그룹 교육프로그램 진행	'19.5월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 검토	'19.6월	
3/4분기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연장	'19.7월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평가	'19.8월	
4/4분기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 초안 마련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소비자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감독대상 금융그룹도 고객 신뢰 증대, 기업가치 상승 등 기대

- (이해관계집단) 감독대상인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시 신규 자본규제 준수, 계열사 지원 제약 등의 영향으로 제도도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계열사간 출자관계에 따른 자본의 중복·과다계상을 방지하고 특정 계열사에 위험 집중 및 그룹 동반부실 예방

-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도입으로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다수 금융선진국(예: EU, 미국, 호주, 일본)은 금융그룹감독제도를 既 운용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금융소비자보호 (성과관리 비대상)				
① 금융소비자보호(1831)	일반회계	-	1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금융그룹감독 체계 정비 추진정도	-	-	-	50점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를 통해 금융그룹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각 추진단계를 점수화하고, 합계 50점을 목표치로 설정	· 법제화 관련 - 법안 국회 공청회 10점 - 업계 간담회·토론회 10점 - 법안 의원실 설명 각 2점(10점) · 하위법규 제정 관련 - 시행령안 마련 10점 - 감독규정안 마련 10점 · 금융그룹감독제도 체계적 정비방안 검토(연구용역 실시) 10점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운영의 충실도	-	-	-	50점	법제화 이전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대상 교육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의 충실한 운영과정을 점수화하고, 합계 50점을 목표치로 설정	· 모범규준 운영 관련 - 모범규준 개정·연장 10점 - 감독대상 재지정 10점 · 금융그룹 의견수렴 및 교육 - 금융그룹감독 실무TF 각 5점(10점) - 교육·홍보 세미나 개최 각 5점(10점) · 현황점검·평가 관련 - 자본비율 평가 10점 - 전이위험 모의평가 10점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IV-1-②)

□ 추진배경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충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선정되거나, 요건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다수

* 심사대상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

-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시 대표이사의 영향력 행사로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고액 연봉 임원들의 성과보수에 대한 충분한 공시와 주주들에게의 설명의무도 미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논의가 미진한 상황

* '18.9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9.3월까지 아직 법안소위 미논의

- 국회 통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법 개정 前 시행 가능한 부분은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필요한 하위 규정 개정안도 미리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주주적격성 심사 내실화)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등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추가

- 심사대상 확대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만큼 상임위 병합심사 및 의원질의시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된 심사대상을 실질적인 지배력을 반영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

* 채이배 의원안('17.9월), 유동수 의원안('18.11월)

- (임원선임 투명성 강화) CEO가 본인의 연임을 위한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CEO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임추위 참석도 제한
-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 (이사회 운영 선진화)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규정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의원실, 정부위 행정실 설명	'19.1-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관련 세미나 참석	'19.3월	
2/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의원실, 정부위 행정실 설명	'19.4-6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정부위 법안소위 논의	'19.4-6월	
3/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19.7-9월	
4/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업계의견 수렴	'19.10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해관계자) 금융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재산권 제약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직·보수통제가 강화되어 금융권 종사자 일부의 반발 예상

□ 기대효과

-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 내부이익이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	-	-	법 개정안 설명 (7회) 및 하위 규정 개정안 마련	•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정부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 -정부위 법안소위 의원(12인)중 '18년 5인에 대해 설명한 점을 감안하여 산출	• 법안소위 설명 횟수 •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 설명자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	-	-	-	하위 규정 개정	•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법 개정 전 시행할 수 있는 내용 및 기타 개정수요를 취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추진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보 게재	

(1) 주요 내용

-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를 강화하여 자본시장내 공정질서 확립
- 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여 금융분야의 반칙과 부당 행위를 철폐
-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행균 사건 처리건수	8	8	8.9	9건	최근 3년 평균 사건처리 건수(8건) 대비 10% 상향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	5,872	4,388	4,190	4,970 (5개년 평균치)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5개년 평균) 대비 3% 감소를 목표로 설정 *(14)5,551→*(15)5,615→*(16)5,872→*(17)4,388→*(18)4,190	정량(건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연도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현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조사·처리를 위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경우, 중요 범죄행위에 대해 민간인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 추진할 필요
- 기존 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과 관련된 관행을 바꾸는 것인 만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준비를 거칠 예정
- 공시제도 개선은 기업측의 부담, 기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용역 등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IV-2-①)

추진배경

- 추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적발에서 처벌까지의 전단계에 걸친 다양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및 특사경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증선위 자문기구(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수사기관 참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등 증선위·검찰·금감원간 협력 확대
-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조직을 신설하여 긴급·중대사건을 신속 처리
* 「사법경찰관리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공무원·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천할 수 있으며, 특사경은 압수수색·통신조회 권한 등 보유
-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제재대상자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TF 운영	'19. 3월	
2/4분기	특사경 활용 방안 마련	'19. 5월	
3/4분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19. 上	
4/4분기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운영	'19. 下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자본시장 및 일반 국민 등이 모두 수혜
- (이해관계집단) 금감원 및 거래소 등 조사심리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 제재조치 대상자 등

□ 기대효과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규율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신규	개정	증권위 자문기구에 수사기관 참여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금융위 홈페이지
특사경 활용방안 마련			신규	방안 발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대한 효율 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되 국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사경 활용방안 마련	방안 발표	보도자료 등

②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IV-2-②)

□ 추진배경

-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은 형벌에 한정
 - 불공정거래 행위는 성질상 형사벌이 요구하는 수준의 위법성 입증에 어려워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거쳐 처벌이 확정되므로 즉각적 제재가 어려워, 투자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부 한계
- ⇒ 자본시장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엄중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 제재 신설 추진

※ 美·英·日 등 주요국은 형벌 외 과징금(civil penalty)도 부과가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안)
 -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기발의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과징금 제재 도입에 따른 형벌 형해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법무부·검찰) 협의 추진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17.12.8.) >

- (부과대상)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및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173조2제2항)
- (처벌수준) 부당이득금의 2배 이하.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50억원 이하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징금 제재 신설 관련 법무부·검찰과 협의		
2/4분기	과징금 제재 신설 관련 법무부·검찰과 협의		
3/4분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계속)		
4/4분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자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 제고 등)
- 이해관계집단 : 법무부·검찰은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에 따른 형벌 형해화 가능성을 우려

□ 기대효과

- 과징금 제재 신설을 통해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엄중 처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자본법 개정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은 국민에게 침익적인 사항으로 법령 개정 필요	자본시장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③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 대응(IV-2-③)

□ 추진배경

- 그간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없는 범죄의 성격을 가져 은닉화되고 적발이 곤란**

* '17년말 기준 불법사금융 규모는 6.8조원 규모로 약 52만명

**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형태로 범죄 실행 (예: 마약거래, 성매매, 도박 등)

- 불법사금융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터넷·SNS 확산 등으로 일반 국민의 불법사금융 접촉기회는 확대되는 상황

⇒ 단속강화 및 불법사금융 수급유인을 줄이는 근본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무분별한 불법대출 광고·불법적 모집 등으로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규제 정비방안 검토
- 불법사금융 적발 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Kick-Off회의 개최	'19.3월	
2/4분기	관계기관·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 초안 마련	'19.6월	
3/4분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최종안 마련·발표	'19.9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차주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기대효과

-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 노출을 억제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지원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 발표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④ 주총 활성화·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 지원(IV-2-④)

추진배경

- 최근 **새도우보팅제도* 폐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 제고 등으로 인해 **형식적 주주총회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 * 새도우보팅제도는 상장기업들이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없는 주주총회”가 가능하게 했던 측면
 - 대주주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대두
- 아울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설한 지배 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주들이 **기업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상법(법무부 협업) 및 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 * ①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②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 연장, ③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
- **대량보유 공시제도(5%를)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연중)
 - * 금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
 -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 추진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 공개, 공시내용의 제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있고 성실한 정보전달** 유도
 - * (예) 명절·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연공시(소위 '올빼미 공시') 대응방안 마련 (거래소 협의)		
2/4분기	5%를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3/4분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4/4분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및 기업공시 서식 개정 추진 (금감원 협의)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등)
- 이해관계집단 : 주식회사 및 그 주주(기관투자자 포함)

기대효과

- 주주권의 신장 및 기업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견제 및 장기적 관점의 투자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도모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및 발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보도 자료
5%를 개선 연구용역 추진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보고서

성과목표 IV-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원칙중심, 사후규제 강화'로 전환하여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
 -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자산운용산업의 규제를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 자산 규모 (단위 : 조원)	355.4	388.7	438.8	433.7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총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산출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 자산 평균 × 110%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에서 자료 수집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규제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
-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안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투자업 영업자율성 확대(IV-3-①)

□ 추진배경

-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
- 엄격한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
-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Fin-tech 기업에 대한 위탁 등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 금융투자업자가 겸영·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전 심사를 통해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보교류차단장치는 법령에서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
으로 설정·운영하도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 방식으로 전환
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19.3월	
2/4분기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19.6월	
3/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9월	
4/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금융투자업자, 금융소비자 및 혁신기업

□ 기대효과

-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특화·전문화 촉진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효율성 제고
- 혁신 IT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국내 증권사 총 자산 규모 (단위 : 조원)	348.9	381.5	431.1	425.9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산출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 평균× 110%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에서 자료 수집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IV-3-②)

추진배경

- 파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시장 이탈과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축소 등 시장기반이 취약하고, 상품다양성도 부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 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관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 파생시장 본연의 위험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생상품을 상장하고, 지수개발을 촉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마련	'18.5월	
3/4분기	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8.7월	
4/4분기	전산 개발 및 회원사 연계테스트	'18.11월	
	시행	'18.11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파생상품시장을 활용하는 투자자

기대효과

- 다양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기반을 두텁게 보완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실적(일평균)	371	487	611	539	최근 3년간 시장조성실적(평균)을 감안하여 일평균 539십억원을 목표로 설정	최근3년평균 거래실적(490억원) × 110% (평균적 수준 대비 10% 성장 목표)	한국거래소

③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IV-3-③)

□ 추진배경

- 자산운용산업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
-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 '16년 이후 수탁고(펀드+일임)가 1,000조원을 상회
- 그러나,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모습
*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체계를 경영참여형 및 전문투자형 2개로 단순화, 운용사 진입형태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등
- 그간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공모펀드 등의 자산운용업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
- 특히,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현장의 의견 청취	'19.2월	
	제도개선 방안 발표	'19.3월	
2/4분기	제도개선 방안 관련 입법예고	'19.6월	
3/4분기	법령개정 추진 (지속)	'19.9월	
4/4분기	법령개정 완료	'1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현장의 불편 규제를 해소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와 함께 투자자가 수혜 예상

□ 기대효과

- 자산운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자산운용산업이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8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방안 마련	-	-	-	방안 발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기관대표
성과지표 1**

가계부채 증가율

(1) 개요

-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전망치 이하로 유도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23
가계신용 증가율(%)	5.8%	5.7%내외	5.5%내외	5.3%내외	5.3%내외	5.3%내외

목표치 산출근거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전망치* (8.2%)보다 0.5~1.0%p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한다고 발표
- * 과거 10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간 연평균 증가율

측정방법

- 한국은행에서 금융회사 등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잔액을 취합

자료수집 방법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연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통계 활용

(3) 주요 내용

- DSR(Debt to Service Ratio), 손 업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 강화

**기관대표
성과지표 2**

금융산업 경쟁력 지표(총자산+소비자만족도)

(1) 개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목표는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양적 성장 및 금융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23
금융산업 경쟁력 지표	86	90	92	94	96	98

목표치 산출근거

- 신규지표로 기존 지표는 없으나,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드러낼수 있는 일반적인 지표는 금융산업의 총자산 규모이며,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가능

측정방법

- 안정적 성장, 소비자 만족도에 각각 50점씩 배분
 - 전 금융업권 총자산의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 대비 19년도 성장률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금융서비스의 질에 대해 만족(보통 이상)한다는 답변 비율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수집 방법

- 총자산 성장률 : 금감원 업무보고서 / 소비자 설문조사 : 연구용역

(3) 주요 내용

-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19년중 중점 추진), 영업행위 감독강화(상시)

(1) 개요

- KIKO, 저축은행 사태 등 그간의 금융관련 사건·사고에 따라 금융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
 - 금융소비자보호가 개별법으로 규율되어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잡한 금융환경하에 기존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지속
- ⇒ 이에 따라 보다 소금융업권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새로운 보호 제도를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8	'19	'20	'21	'22	'2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신규)	법률 제정	시행령 제정	-	-	-

목표치 산출근거

- 20대 국회 들어 정부 및 의원*이 발의한 5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
 - *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안
- 정부안은 사전정보제공 강화 등 19대 국회 정부안의 주요내용과 19대 국회에서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 관보 및 보도자료

(3) 주요 내용

- ① 일부 상품에만 적용중인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소금융상품에 적용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 * 금융회사가 주요 판매규제 위반시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 금융소비자가 상품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부여하여 선택권을 보장
 -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권 도입
- ③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 2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 ④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 마련,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

**기관대표
성과지표 4**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규모

(1) 개요

□ 전략목표인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질서 확립’의 달성을 위해 관리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 자본시장의 역동성·투명성 강화의 성과로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자본시장 자금조달 규모**를 ‘코스피·코스닥 시장 자금조달 규모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자본시장 자금조달 규모	7,976	6,926	7,467	8,053	8,690	9,383
코스피시장 자금조달(십억원)	4,448	3,050	3,203	3,363	3,531	3,708
코스닥시장 자금조달(십억원)	3,528	3,876	4,264	4,690	5,159	5,675

□ **목표치 산출근거**

○ **(코스피 시장)** ‘16~’17년의 실적이 ‘10년 이후 최대실적임을 감안, 5년간의 평균치를 ‘18년의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5% 상승을 목표 기준치로 설정

○ **(코스닥 시장)** 최근 3년간 IPO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 평균(2,615십억원) 대비 10%* 증가한 금액에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액 목표 1조원을 합산한 수치를 18년도 목표치**로 설정하며 매년 10% 상승을 목표 기준치로 설정

* '17년 실적이 사상최고치로 전년대비 실적이 과도하게 높아 10% 성장을 목표로 설정

** 3,876십억원 = 2,615십억원 × 110% + 1,000십억원

< 자본시장 자금조달 규모(단위 : 십억원)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코스피시장 자금조달	661	3,477	2,404	4,258	4,448	3,050
전년대비증가율	Δ8.7%	426.0%	Δ30.9%	77.1%	4.5%	-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	-	2,119	2,199	3,528	2,615
전년대비증가율	-	-	-	3.8%	60.4%	-

□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 한국거래소 KIND시스템(<http://kind.krx.co.kr>) 및 금융투자협회 벤처펀드 관련 통계에서 자료 수집
 - (IPO자금조달) 연도별 신규상장기업의 공모금액을 합산
 - (벤처펀드 가입액)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 사모 설정액 합산

(3) 주요 내용

-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금융분야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실천하고(성과목표 IV-1),
-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 확립**(성과목표 IV-2)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성과목표 IV-2)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 매주 부위원장 주재 정책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금융 정책의 이행과 홍보 상황 등을 점검**
-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사실상 자체평가위원회 성격을 지닌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와 연계하여 운영**
 - 분기별 정례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 하는 역할을 수행

①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매주)

- 부위원장 주재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금융위 주요정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추진을 독려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국장급 이상 소관부가 참석하여 **성과관리 과제 및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각 실국의 주요 정책 진행상황과 개선방안을 논의
 - 특히, 주간 **홍보계획과 언론 동향** 등은 필수 안건으로 포함하여 국정과제 등의 홍보 전략 및 언론 반응 등을 모니터링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체계 효율화

-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계,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발심 위원을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 제고**

* 금발심-자평위 간 연계성 강화

(예 : 자평위 회의를 금발심 분과회의로 같음하여 분기별 1회 이상(소위별)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략목표별 담당 소위원회로 구분 운영

- 총 4개 전략목표를 각 소위별로 1개씩 담당

* 1소위(전략목표Ⅰ), 2소위(전략목표Ⅱ), 3소위(전략목표Ⅲ), 4소위(전략목표Ⅳ)

- 각 소위별 평가지원 T/F*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원 : 해당 전략목표 관련 성과관리과제 담당자

③ 연간 점검·평가 관련 세부실시계획

① 매주, 매분기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 정책조정회의(매주), 금발심 분과회의(매분기)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실적점검 및 정책컨설팅 기능 강화

② 하반기 중간점검 실시 ('19. 6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등 점검

③ 하반기 최종자체평가 실시 ('19. 12월~'20.1월) ※ 다음 페이지 [참고]

- 평가지원T/F를 통한 평가기초자료(실적보고서 등) 준비, 소위원회평가 및 최종평가회의까지 단계적인 평가체계 수립

※ [참고] 하반기 최종자체평가 단계별 세부계획

1단계 평가 기초자료 준비 (평가지원TF)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중심으로 평가의 기초자료를 (관리과제의 추진방향 및 분기별 추진실적 등) 분기별로 준비
- 분기별로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자체평가 계획」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최종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 ① 세부추진계획의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② 분기별 계획 이행도, ③ 성과지표 달성도, ④ 정책 효과성(정성적 평가)

2단계 검토 및 1차평가 (소위원회)

- 최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소관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 소위별 우수 과제 선정 (1~4소위 각각 1개)

3단계 평가점수 등 최종 확정 (최종평가회의)

- ① 소위별 1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에서 1차평가 시 선정한 우수 과제에 대한 2차 평가 시행
 - ⇒ 4명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4위 과제 선정
- ② 소위별 1차 평가점수의 평균 차이를 보정*하여 5위 이하 과제 최종 점수 및 순위 결정
 - * 전체과제 평균점수와 소위별 평균점수의 차이를 소위별로 과제에 가감
- ③ 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및 우수과제(1~4위) 포상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평가결과는 조직, 인사·성과급 지급, 직원 교육 등에 반영
- ◆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

□ 조직

- 성과평가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부서별 업무량 등에 대한 정보(예: 업무량 대비 인원부족)를 내부 조직개편 등에 활용
 - 다만, 조직개편은 직제개편이 필요하므로 직제개편이 필요없는 내부 태스크포스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

□ 인사 및 성과급

- ① 개인 성과급 지급시 자체평가 결과 반영
 - 5급 이하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관련 유공사항을 가점 (10점) 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② 성과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등에도 연계 강화하는 방안 지속 강구
- ③ 우수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에게 포상·국외출장·단기연수 등에서 배려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성과관리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화요거시금융포럼 등 자체교육 활용
- 담당 과제 및 금융제도·현안에 대해 직원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3. 변화관리 계획

(1) 변화관리 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 변화관리전략과 관리방향

-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및 인사의 연계 고리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
 - 업권별 금융전문가 인재DB를 구축·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금융 포럼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세부실천과제

① 성과관리와 업무의 연계성 강화

- (교육 강화) 상시학습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를 확산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피드백 실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에 반영

② 금융정보 관련 웹페이지* 개선

* 19.3월 기준 총 36개 금융관련 포털 운영 (금융위 5개, 금감원 11개, 협회 7개 등)

- (사용자 환경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시스템 만족도 제고
- (피드백 실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

③ 학습체계 내실화를 통한 업무 역량 증진

- (학습프로그램 다양화) 브라운 백 미팅(연간 8회 수준), 전문교육 기관 위탁(연중 수시) 등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 (학습 유인체계 구축)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기반 조성

(2) 성과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 성과지표 관리전담팀 운영

- 기획재정담당관실을 성과지표 관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전체 성과지표들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총괄
 - 성과지표 POOL* 지속 관리 및 활용도 제고
 - * (구성) ① '12~16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이용지표
 - ② 주요 국제기구 REPORT상 금융관련 지표
 - ③ e-나라지표(통계청)상 금융분야 지표
 - 등을 포함하여 300개 성과지표 POOL 마련
 - * (활용)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배포 성과관리 총괄담당자 교육자료 등
- 성과지표 수정·보완 관련 국조실과의 협의 시 총괄 역할 수행

□ 하반기 자체평가 성과측정시 평가기준 개선

- 지난 성과관리 시행계획·실적보고서, 최종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평가 점수부여 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
- 성과관리과제 추진계획의 난이도 및 구체성에 따른 점수 차별화, 불리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한 경우 가점 부여 등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 현장점검 프로세스 효율화·체계화

< 계획 수립시부터 수요자 의견 반영 >

① 현장 점검

- 각 금융회사의 건의과제 수 및 방문 희망일시 등을 업권별 협회를 통해 사전조사하여 분기별 방문계획 수립

※ 건의과제 수가 적은 경우 다수 회사 동시 점검 → 점검 효율성 제고, 개별 회사가 업무부담 등을 고려, 희망일시 요청 → 점검 부담 완화

② 테마 점검

- 실무부서 의견 사전 반영하여 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 후 옴부즈만 및 금발심 결과 보고

< 과제 관리 철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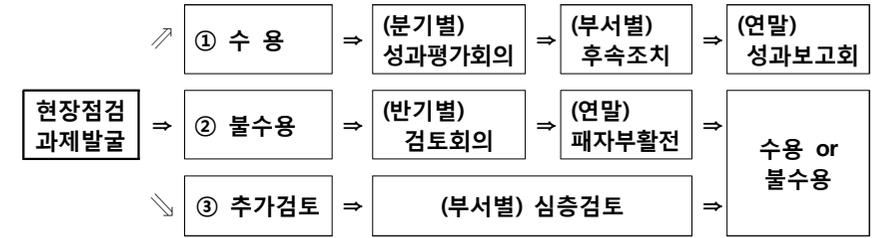
① 현장건의과제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A, Alert) 접수 후 2주일 이내 회신 (접수 후 1주일 후부터 현장 점검반에서 중점 관리)
- (B, Basic) 당초 현장점검 과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접수 후 1개월 이후에는 yellow, 2개월 이후에는 red로 전환하여 환기
- (C, Careful) 검토기간이 2개월을 경과할 경우 '추가검토'로 회신하고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 (6개월 연장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수용을 권장)

② 체계적인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 성과보고회, 패자부활전 등의 다양한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 현장점검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안)



(2)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및 소통 강화

<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

① 금융규제 민원포털 개선

- '주제별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도입하여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영업·업무규제', 'IT보안' 등 카테고리별 메뉴 설정, '자주 묻는 질문' 코너 등 신설

②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 (홍보 강화) 현장점검시 비조치의견서 제도 안내 및 은행연, 금투협 등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 (집중접수 기간 운영) 법 개정·제도 도입 후 1년을 '비조치 의견서 집중접수 기간'으로 운영, 시행 초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 제도 도입시 보도자료에 비조치 의견서 제도 개요 및 제출 방법 등 안내

-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반기별로 각 업권 협회를 통해 비조치 의견서 접수, 일괄회신 추진

③ 음부즈만 제도 활성화

- (음부즈만 운영 활성화) 정기회의* 외에 심도있는 안전검토를 위한 자체회의 및 실무협의회** 수시개최

* 음부즈만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분기별 1회 → 2회로 확대

**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실무부서 사전 검토로 회의 운영 내실화 지원

- (홍보 강화) 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상시홍보, 쌍방향 소통 강화

※ (17.1분기) 금융위·각 협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네이버 블로그* 구축 → 업계 신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 ① 음부즈만 위원장 메시지, ② 익명 신고 코너, ③ 음부즈만 주요활동 홍보 등

- (위-원 음부즈만 연계) 현행과 같이 별도 운영하되, 주요 안전은 위-원 음부즈만 합동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

<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 >

① 메일링 서비스 실시

-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규제개선 사항,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매월 송부*

* 해당 이메일 계정을 건의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통로로 운영

②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등 현장메신저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

(3) 금융개혁 현장점검 범위 지속확대

① 일반 기업 및 금융소비자 점검비중 확대

- 월 1회 일반 기업·금융소비자 현장방문 실시를 통해 최종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 확인, 제도개선 건의 청취

- ① (기업 현장방문) 주요 금융정책 관련 영향을 받게 될 제조·서비스업 분야 기업 대상으로 현장방문·간담회 등 추진

* (예시) IPO 개선방안 관련 상장 준비기업 간담회

- ② (소비자 현장방문) 보험·신용카드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대표성을 지닌 일반 금융소비자 대상 간담회* 추진

* (예시) 업권별 네이버 대표 카페 운영진과 협의, 일반 소비자 간담회 실시
↳ 보험을 찾는 사람들(회원 10만명), 신용카드 박물관(회원 19만명)

② 지역 금융기관간 연계 강화 및 지속방문

- 지역별로 '지역금융협의회'를 구축, 지역 금융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슈 발생시 적기대응 추진

③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

-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금융개혁 사각지대 지속 해소

④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지속 운영

- 분기마다 외국계 금융회사 TF*를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개선

* 외국계 CEO 간담회 등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0	0	2 (50%)	2 (50%)	2 (50%)
성과목표	13	3 (23%)	6 (46%)	2 (15%)	2 (15%)	9 (69%)
관리과제	63	12 (19%)	26 (41%)	11 (17%)	14 (22%)	23 (36%)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19년 가계부채 증감액 / '18년 가계부채 총 잔액	5.7%	정량	결과	
2.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점검조치	(1)EWS모니터링 실시 횟수 + (2)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 평가 횟수	15회	정량	과정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한다	혁신·중소기업 자금 공급 실적	정책금융기관' 자료 합산 *산은, 기은, 신보	8.99조원	정량	투입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25건	정량	투입	
2.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업 경쟁도 평가 회의 개최 및 평가결과 발표	회의개최	회의 개최 및 결과 발표	비정량	과정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 마련	비계량	과정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강화	방안 발표(보도자료 배포) 여부	금융 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발표	비정량	과정	
2. 일상생활 속 불편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발표한 대책 수	대책 발표(보도자료 배포) 수	4건	정량	과정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 마련 여부	마련	비정량	과정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 의원실 설명 횟수, 토론회 등 개최 건수, 시행령안 내부자료 마련 여부	· 의원실 설명 10회 ·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3회 · 시행령안 마련	정량	투입	
2.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율평균 사건 처리 건수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9건	정량	산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	정량(건수)	4,970 (5개년 평균치)	정량	산출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 자산 규모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 자산 평균 × 110%	433.7조원	정량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리지표 도입	도입	비정량	과정	
	②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19년 대출취급계획 / '18년 전액	도입	비정량	과정	
	③ 취약차주 안전망 강화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출시	상품 출시 여부	상품 출시	비정량	산출	
		주담대 연체차주 지원강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상품 출시	비정량	산출	
④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민간은행 유한책임 대출 도입 인센티브 마련	시행규칙 개정	방안마련	비정량	과정		
	정책모기지 중 유한 책임대출 공급액	주금공 업무통계	2.0조원	정량	투입		
2.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공통)	개최 실적	기금, 금강원 등점검의 8회	정량	산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공통)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12회	정량	산출	
		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개최 실적	4회	정량	산출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취약계열 및 부실정후 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실시 결과 및 취약계열, 기업 선정여부 확인	연3회	정량	산출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다양화	운용방식 다양화	도입	비정량	과정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한다.							
	①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	제작금융 상생보증 지원 금액	0.04조원	정량	투입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실적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액	0.35조원	정량	투입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우대보증 지원금액	0.3조원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조선·자동차부품업체 만기연장	만기연장 금액	2.3조원	정량	투입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실적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금액	4.0조원	정량	투입		
		환경·안전투자 지원 실적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금액	2.0조원	정량	투입		
	②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동산담보법 개정안 마련	마련방안 여부 확인	방안마련	비정량	과정		
		선순환 보증지원방안 마련	마련방안 여부 확인	방안마련	비정량	과정		
	③ 청년·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마포 청년혁신타운 개소	공사 착수 여부 확인	공사 착수	비정량	과정		
(신보) 창업기업 정책자금 공급 (기은) 창업기업 정책자금 공급		자금공급 공급실적	자금공급 공급실적	정량	투입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혁신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25건	정량	산출		
		② 결제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시행	시행	비정량	결과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 마련	방안 발표	방안 마련	비정량	과정	
	③ P2P 대출 법제화	P2P금융 관련법의 종합적 대안마련	대안 마련·제출	마련	비정량	과정		
④ 데이터활용 저해하는 규제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개정 완료	비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2개사 이하 인터넷은행 신규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 비인가(2개사 이하)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정량	산출	
	② 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비정량	과정	
	③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특화보험사 설립허가	특화보험사 설립 허가	설립 허가	비정량	산출	
	④ 보험판매 채널 전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구축 및 운영	비정량	결과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그림자규제 정비	행정지도·자율규제 정비과제 이행	행정지도, 자율규제 폐 지 또는 개정여부 확인	이행 완료	비정량	결과	
	② 검사·제재 혁신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마련	비정량	과정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규정 개정 여부	규정개정	비정량	결과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금융소비자제도 개선노력	법안소위 등 국회논의횟수 및 의원실 방문 횟수	30건	정량	산출	
	②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방안 발표(보도자료 배포) 여부	방안 발표	비정량	과정	
	③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들의 지원금 합산	2,430억원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체계 및 DB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구축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구축	비정량	과정	
		사회적금융DB 구축	서민금융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구축	비정량	과정	
2.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①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마련	비정량	과정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마련	비정량	과정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대출금리 모범기준 개정	개정 여부	모범기준개정	비정량	과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개정 여부	시행세칙개정	비정량	과정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산출	산출 여부	지표산출	비정량	산출	
	③ 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 확대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구축 여부 확인	구축	비정량	결과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사잇돌 대출 누적 공급액	공급실적 합산	5.15조원	정량	투입	
		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초저금리 대출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주택연금	지원실적 확인 상품출시 여부	1.8조원 출시	정량 비정량	투입 결과
	③ 주택연금 제도개선	활성화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마련	비정량	결과	
		주택연금 연간 지급액	주금공 공급실적	1.0조원	정량	투입	
④ 청년·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청년 전월세지원 프로그램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마련	비정량	결과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	금융그룹감독 체계정비 추진정도	·법제화 관련 - 법안 국회 공청회 10점 - 업계 간담회·토론회 10점 - 법안 의원실 설명 각 2점(10점) ·하위법규 제정 관련 - 시행령안 마련 10점 - 감독규정안 마련 10점 ·금융그룹감독제도 체계 적 정비방안 검토(연구용 역 실시) 10점	50점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운영의 충실도	· 모범규준 운영 관련 - 모범규준 개정·연장 10점 - 감독대상 제자형 10점 · 금융그룹 의결수령 및 교육 - 금융그룹감독 실무IF 각 5 점(10점) - 교육·홍보 세미나 개최 각 5점(10점) · 현황점검·평가 관련 - 자본비용 평가 10점 - 전이위험 모의평가 10점	50점	정량	과정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지배구조 법 개정추진	· 법안소위 설명 회수 ·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법 개정안 설명 및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비정량	과정	
		금융회사지배구조 법 하위규정 개정추진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보 게재	하위규정개정	비정량	결과	
2.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유관기관 협업강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개정	비정량	결과	
		특사경 활용방안 마련	방안 발표	방안 발표	비정량	과정	
	②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 신설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법 개정	비정량	결과	
		③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 대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발표	비정량	과정
④ 주총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지원	주주총회 내실화방안 마련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및 발표	대책 발표	비정량	과정		
	5%를 개선 연구용역 추진	연구용역 완료	연구 용역 추진	비정량	과정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금융투자업 영업자율성 확대	국내증권사 총자산 규모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 자산 평균 × 110%	425.9조원	정량	결과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실적	최근3년평균 거래실적(490억원)× 110% (평균적 수준 대비 10% 성장 목표)	539십억원	정량	결과	
	③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자산운용업 규제 개선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발표	비정량	과정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동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가계부채 관리강화	업무 1-2-2, 국정 21-1
	②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업무 1-2-2
	③ 취약차주 안전망 강화	업무 1-2-2
	④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국정 21-6
2.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업무 1-2-1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	업무 1-2-3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①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업무 1-1-1
	②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업무 1-1-2
	③ 청년·지역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업무 1-1-3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업무 2-2, 국정 22-5
	② 결제인프라 혁신 및 금융결제업 개편	업무 2-2
	③ P2P 대출 법제화	업무 2-2
	④ 데이터활용 저해하는 규제 정비	업무 2-2, 국정 22-5
2.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업무 2-2-1, 국정 22-1
	② 금융산업 진입규제 정비	업무 2-2-1, 국정 22-1
	③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업무 2-1-2
	④ 보험판매 채널 건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업무 2-1-2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그림자규제 정비	업무 1-4-3
	② 검사·제재 혁신	업무 1-4-3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업무 2-1-1, 국정 21-5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②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업무 2-1-1, 국정 21-5
	③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업무 2-1-4
	④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체계 및 DB 구축	업무 2-1-4
2.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①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개선	업무 2-1-2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업무 2-1-2
	③ 소비자 일상생활 금융편의 확대	업무 2-1-2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업무 2-1-3, 국정 29-4
	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2-1-3
	③ 주택연금 제도개선	업무 2-1-3
	④ 청년·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업무 2-1-3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	업무 1-3-1, 국정 24-4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업무 1-3-1, 국정 22-4
2.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업무 1-3-2
	②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업무 1-3-2, 국정 23-5
	③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엄정 대응	업무 1-3-3, 국정 21-2
	④ 주총 활성화·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지원	업무 1-3-4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금융투자업 영업자율성 확대	업무 2-2-3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업무 2-2-3
	③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업무 2-2-3